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공보관 인권보호관 김준섭
전화 031-820-4460/팩스 0502-193-2572

보도자료
2024. 2. 5.(월)

제 목

코스닥 상장 목재가공업체 임직원 폐기물 불법소각 등 혐의로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의정부지방검찰청 환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호석)는 지난 금요일(2. 2.)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소각하여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 등을 배출하고, 지정폐기물을 불법처리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전 대표이사 ㄱ〇〇 등을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목재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 기업은, 인천 중구에 A공장, 아산시에 B공장 등을 운영 중이며, 총 자산 1조 3,400억 원(2022년 기준) 상당인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환경범죄중점청으로서,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영장, 증거관계, 법리검토 등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조하여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밝혀냈고, 환경부로부터 위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한 후 기소하였습니다.

●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다양한 환경범죄를 엄단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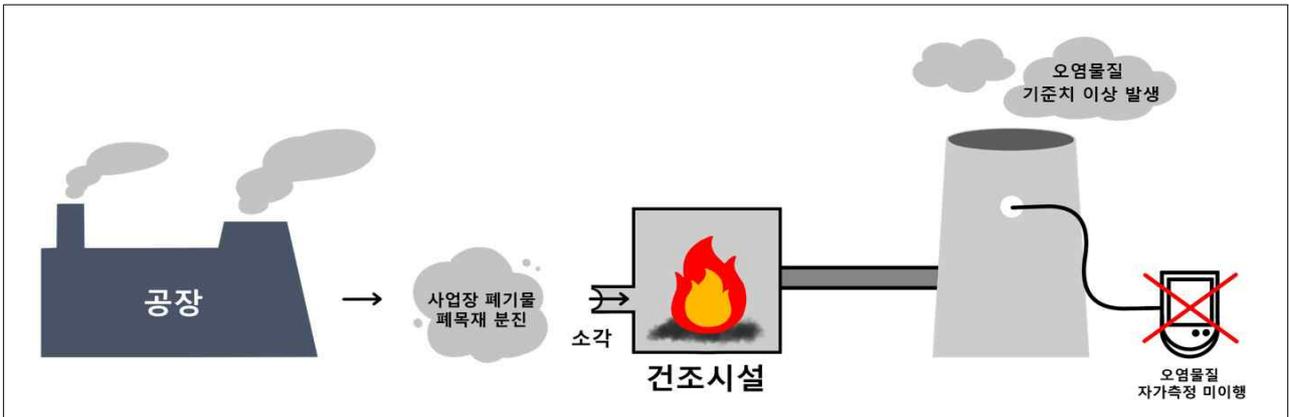
피고인

- ㄱ○○(남, 58세), 前 대표이사, 現 고문
- ㄴ○○(남, 59세), 前 총무환경부문장(이사), 現 퇴직
- ㄷ○○(남, 56세), 前 B공장 공장장(부장), 現 총무팀
- ㄹ○○(남, 51세), 환경팀장(차장)
- ㅁ○○(남, 50세), A공장 환경기술인(차장)
- ㅂ○○(남, 31세), B공장 환경기술인(대리)
- 법인

2

공소사실 요지

【A공장에서의 범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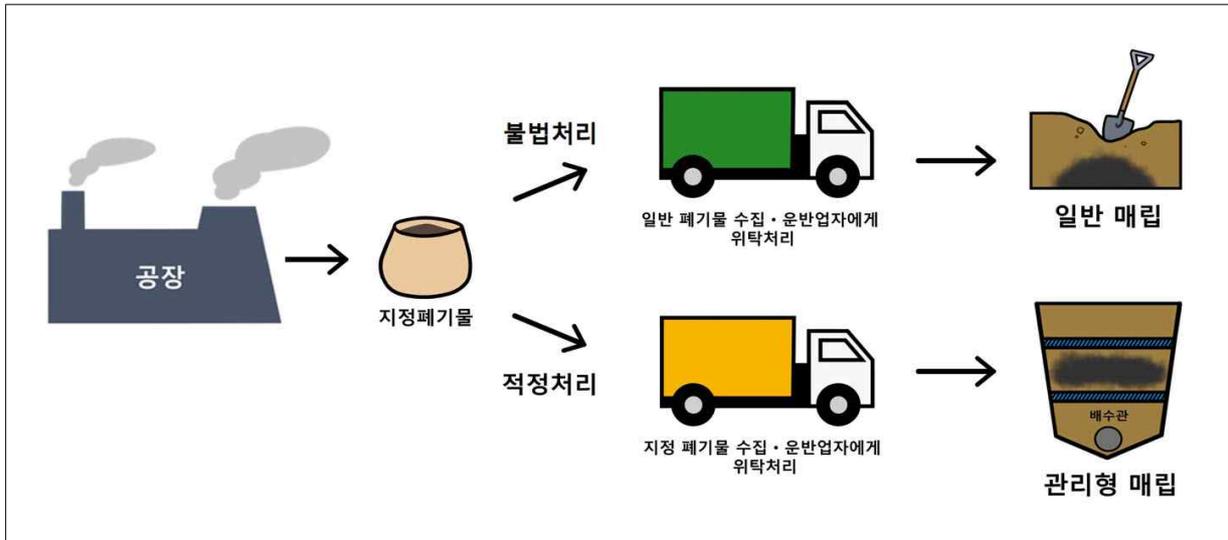


- (ㄱ○○, ㄴ○○, ㄹ○○, ㅁ○○의 공동범행) 사업장폐기물을 A공장 및 자회사 내 허가받지 아니한 건조시설에서 불법 소각[폐기물관리법위반]
 - ※ ㄱ○○는 '13. 1.~'22. 10. 24만 톤, ㄴ○○는 '17. 6.~'22. 8. 13만 톤, ㄹ○○는 '18. 11.~'22. 10. 9만 톤, ㅁ○○는 '12. 1.~'22. 10. 25만 톤 불법소각
- (ㄴ○○, ㄹ○○, ㅁ○○의 공동범행) '18. 3.~'22. 10. 위 소각과정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불법소각을 은폐하기 위해 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대기환경보전법위반]
 - ※ 측정결과 납 10배[측정치 0.5mg/S^m, 적용기준치 0.1mg/S^m], 포름알데히드 64배[측정치 5.155ppm, 적용기준치 0.08ppm], 니켈 830배[측정치 8.3mg/S^m, 적용기준치 0.01mg/S^m] 등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사실 확인

【B공장에서서의 범행】

- (ㄴ○○, ㄷ○○, ㄹ○○, ㅂ○○의 공동범행) 공장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¹⁾을 환경부장관의 처리계획확인을 받지 않고 일반폐기물로 처리함[폐기물관리법위반]

※ ㄴ○○는 '21. 3.~'22. 1. 570톤, ㄷ○○, ㄹ○○는 '19. 7.~'22. 1. 1,600톤, ㅂ○○는 '19. 12.~'22. 1. 1,300톤 불법처리



- 피고인들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확인되었음에도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에 따른 시간과 비용소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 검사결과, 납 성분 최대 20배[측정치 61.34mg/L, 기준치 3mg/L]의 지정폐기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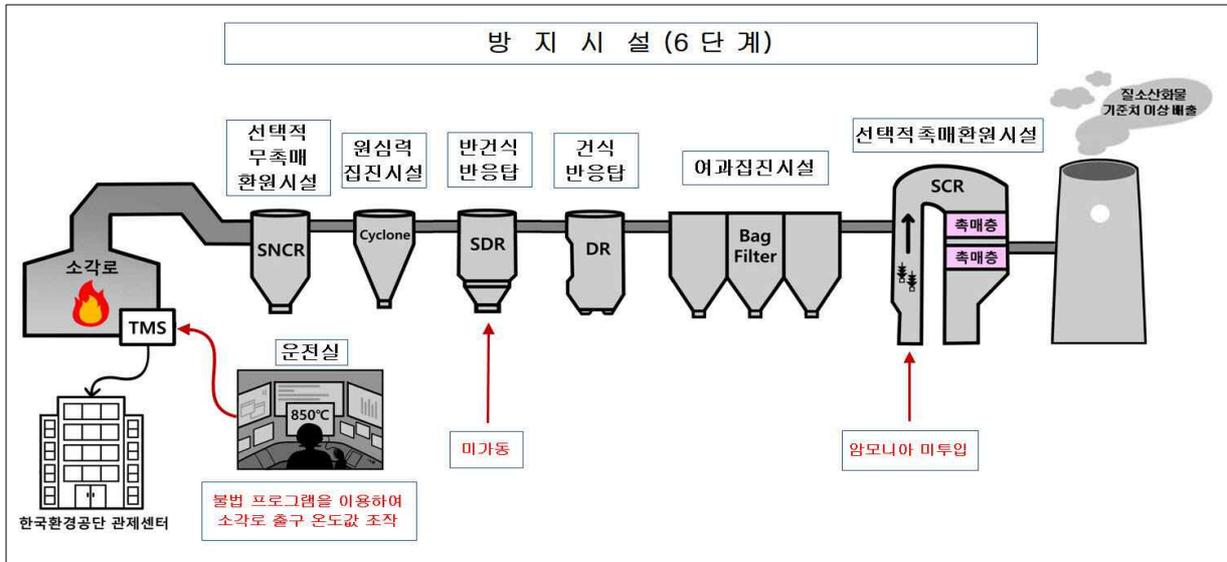
- (ㄴ○○, ㄷ○○, ㄹ○○, ㅂ○○의 공동범행) 소각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반건식반응탑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환원제를 투입하지 아니하고 선택적촉매환원시설을 가동하여 기준치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장 굴뚝에 설치된 오염물질 측정기기의 온도값을 조작함 [대기환경보전법위반]

※ ㄴ○○는 '17. 6.~'22. 4., ㄷ○○는 '13. 11.~'22. 4., ㄹ○○는 '18. 11.~'22. 4., ㅂ○○는 '19. 11.~'22. 4. 각각 본건 범행에 가담

※ '17. 1.경 140.63ppm(기준 70ppm), '21. 4.경 102.12ppm(기준 50ppm) 등 기준치 2배 상당의 질소산화물 배출 확인

1)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성분검사 결과, 납, 수은, 비소, 카드뮴 등 중금속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되면 지정폐기물이고, 기준치 이하일 경우 일반폐기물로 분류됨

☞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관리형 매립을 통해 중금속을 신속하게 분해할 수 있으나,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분해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 폐기물이 매립된 토양에서 농작물을 재배했을 경우 중금속이 인체에 흡수될 위험성이 높음



- 피고인들은 소각로 온도를 850℃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MS²⁾의 소각로 출구 온도값을 조작하였고,
- 소각로에서 발생한 가스의 온도가 낮아 액상소석회³⁾가 기화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반건식반응탑³⁾을 가동하지 않았으며,
- 악취로 인한 민원 등을 이유로 선택적촉매환원시설⁴⁾에 환원제인 암모니아를 투입하지 않아 기준치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였습니다.

3 수사 경과

- '21. 6.~'23. 1. 환경부 수사(사업장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
- '23. 1. 27. 의정부지법, ㄴ○○, ㄷ○○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 ※ 주거 일정,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할 우려 없음
- '23. 7. 환경부, 의정부지법에 사건 송치
- '23. 7.~'24. 1. 검찰, 관련자 조사 등 보완수사
- '24. 2. 2. 불구속 기소

2) TMS(Tele-Monitoring System)란 대기오염물질 농도, 소각로 온도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여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로 전송하도록 하는 자동측정기기로, 850℃ 이상 유지해야 다이옥신 등 열분해 속도가 느린 물질도 1초 이내에 분해·산화 가능함

3) 반건식반응탑(SDR, Semi Dry Reactor)이란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성가스에 액상소석회를 투입하여 염화수소 등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임

4) 선택적촉매환원시설(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이란 암모니아를 투입해 촉매층을 통과시켜 질소산화물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임

4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

-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사건의 실체 확인 및 불법 해소
 -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환경범죄중점청으로서,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영장, 증거관계, 법리검토 등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조하였습니다.
 - 그 결과,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 2회,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실시하여 폐기물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련 보고자료, 이메일 등 범행의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하였고,
 - 폐기물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다수 임직원들이 긴밀하게 지시·보고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나아가 적발시 대응 요령을 미리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한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 또한, 이 사건 수사를 계기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등의 불법사항이 전부 시정되었습니다.
-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다양한 환경 범죄를 엄단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